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일부인정된죄명:특수공무집행방해)·일반교통방 해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[수원지방법원 2009. 8. 14. 2008고합664,2008고합751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수권외 1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다산, 담당변호사 최진환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압수된 2008년 정기대회 자료집(증 제1호), 우리민족끼리 책자(증 제2호)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